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4975 판결 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단4975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경

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왜 집으로 갔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족발집 앞길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8. 31. 03:09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오우 죽이는데? 자기 오늘 너무 잘 하는 거 아니야?" "나 네가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자지가 좋아서, 보지 맛을 알아서 그런 것 같다고!", "자지가 너무 들어오는 것 아니야? 오늘 너무 잘하는 것 아니야?"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03: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자기하고 섹스하고 자기하고 자기 보지 만지는 것 다 딸한테 보냈어", "자지가 보지로 막 들어가니까 좋아? 응? 병신아! 막 들어가니까 물이 씨팔년아 쭉쭉 나오냐고?"라는 등의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 09:19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기간에 약 6회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위 주거지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E, F, G의 각 진술서
- 1.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고인이 전송한 음성메세지의 수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진수